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06:00 < 10.18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7.(월)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	책임자	과 장 김현철 (044-203-5140)
		담당자	사무관 박이용 (044-203-5146)

“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” 10월 18일부터 시행

- 「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」 시행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**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**인 「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(산업부 공고 제2022-766호)」를 시행한다.

○ 금번 조치는 지난 10.6일 “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”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,

○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7조, 제8조 등에 근거하며, 지난 10.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.18일부터 시행된다.

○ 대상은 중앙행정기관, 광역·기초지자체, 시도교육청, 공공기관, 지방공사·공단 및 국·공립 대학 등 1,019개 기관과 그 소속·산하기관 등이다.

□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(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)**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℃ 로 제한

② **(난방기 순차운휴)** 전력피크 시간대(09:00~10:00, 16:00~17:00)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

<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시간>

경기·세종 권역	서울·인천·강원 권역	경상·제주 권역	충청·전라 권역
09:00~09:30	09:30~10:00	16:00~16:30	16:30~17:00

* (경상)부산·대구·울산·경북·경남, (충청)대전·충북·충남 (전라)광주·전북·전남

③ **(개인난방기 사용금지)**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(09:00~18:00)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

※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, 임산부,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

④ **(경관조명 소등)** 옥외광고물·건축물·조형물·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(23:00~익일 일출시)에 소등,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

⑤ **(실내조명 소등)**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, 전력피크 시간대(09:00~10:00, 16:00~17:00)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

□ 금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**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**된다.

* ‘22.9월 누계 원유·가스·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8%, 670억불 증가

○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℃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* 가능하였으나, 금번 제한조치는 **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℃에서 17℃로 낮춰 적용**한다.

* 당초 전기가 아닌 에너지원(도시가스, 집단에너지 등)을 사용하는 난방설비가 60% 이상이면 난방온도를 20℃ 이내에서 제한 가능

○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, LNG 수급 등을 고려하여 **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**하였다.

*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연료의 96.3%가 LNG로 사용(2021년 기준)

○ 다만, 의료기관, 아동·노인복지 관련 시설, 공항, 철도, 지하철 역사 등 **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**이다.

□ 산업부는 지난 **10.14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**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**온라인 설명회를 개최**하고,

○ ‘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,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조치의 **세부 내용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**하였다.

○ 향후 **매월 실태조사**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, **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**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| **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리플릿**



①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합니다.

※ 학교, 도서관, 의료시설, 아동·노인복지시설, 대중교통시설, 문화체육시설 등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편 최소화

② 권역별로 순차운휴 시간대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.

<권역별 순차운휴 시간대(09:00~10:00, 16:00~17:00) >

경기·세종 권역	서울·인천·강원 권역	경상·제주 권역	충청·전라 권역
09:00~09:30	09:30~10:00	16:00~16:30	16:30~17:00

※ **(경상)**부산·대구·울산·경남·경북, **(충청)**대전·충북·충남 **(전라)**광주·전남·전북

③ 업무시간(09:00~18:00)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합니다.

※ 임산부, 장애인 등은 기관장의 승인 후 대상 제외 가능

④ 광고·장식조명은 심야시간(23:00~익일 일출시)에 소등합니다.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합니다.

※ **(광고장식조명)** 대중교통시설, 소방기관, 언론기관, 약국, 의료기관,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, 지자체장 및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

※ **(옥외체육공간 조명)** 민간 개방 공간, 공공기관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된 경우 제외

⑤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% 이상, 전력피크시간에는 50% 이상 소등합니다.

※ **(업무시간)** 09:00~18:00, **(전력피크시간)** 09:00~10:00, 16:00~17:00

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위의 **5대 제한 행위 위반 시**에는 **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*가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(과태료)*
(최초)시정권고 → **(1회)**150만원 → **(2회)**200만원 → **(3회)**250만원 → **(4회)**300만원

